

2011. 9. 6.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안건명	비고
1303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04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1305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06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07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건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8.26.	2011. 8.26.	2011. 9. 5.	2011. 9. 5.	허영옥 의원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2011. 8.26.	2011. 8.26.	2011. 9. 5.	2011. 9. 5.	양승모 의원 대표 발의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8.26.	2011. 8.26.	2011. 9. 5.	2011. 9. 5.	건축디자인과장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8.26.	2011. 8.26.	2011. 9. 5.	2011. 9. 5.	산림녹지과장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8.26.	2011. 8.26.	2011. 9. 5.	2011. 9. 5.	생활환경과장	

2. 제안설명요지

①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백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충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명품화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4]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환불 및 배상규정을 강화하고, 경로사상 고취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하고자 함.

[5]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①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범위 확대(기존 500m→1km)
(안 제12조 제1항)
- 나. 유효기간 연장(부칙 제2조)

②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 가. 특화사업의 지원 대상 규정(안 제3조)
-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③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안 제33조)
- 나.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안 제34조)

④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안 제6조)
 - 시에 거주하는 4대이상 동거가족 20% 감면
 - 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20% 감면

나.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 강화(안 제9조)

- 별표2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

[5]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위원 변경(안 제11조)

- 문화복지국장 → 환경수자원본부장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것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제한 강화로 지역 영세 상권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됨.

[2]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선정·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우리 지역 농특산품 중 ‘충주사과’는 농촌진흥청 주관 사과부문 탑풀르트 선정을 비롯하여 파워브랜드대전 대상, ‘2008 소비자가 뽑은 세계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의 우수성으로 전국적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충주사과’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브랜드나 인지도를 가진 품목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서는 명품 브랜드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특산품의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주시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판단됨.

③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전면도로에 의해 사선제한을 받는 건축물 높이 및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받음. 개정 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전면도로에 대한 규정을 계량화, 단순화 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충주시와 시행사간 조례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됨.

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현행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배를 띄워 건축하여야 하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조건에 따라 0.6~0.7배를 띄어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있음.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높이 8m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1/2 이상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조례안 심사에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난 해소’ 중 어느 부분을 우선 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됨.

참고 : 개정안과 관련한 타 지자체와의 비교표 (다음 장)

【참 고】

건축조례 타 지자체와의 비교표

□ 정북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분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음성군	비고
현행	1.0배	1/2배	1/2배	1/2배	
개정(안)	1.0배 (0.6배, 0.7배)				

□ 2개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전면도로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

구분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음성군	비고
현행	규정없음	대지둘레 접한길이 1/8이상	규정없음	규정없음	
개정(안)	대지둘레 접한길이 1/6이상				

④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 기본법」을 준용하여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 기준을 강화하고, 관내 4대 이상의 동거가족 및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기준 강화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품목별 해결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품목별 기준을 제시하였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우리 시 관내에서 운영중인 휴양림의 예약 취소율을 살펴 보면 2009년 8%, 2010년 14%, 2011년 7월 현재 15% 정도로 취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및 관광객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환불기준을 100%까지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개정안에서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환불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의 확대

안 제6조에서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4대 이상의 동거가족과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하고자 하고 있음.

이는 경로사상의 고취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됨.

⑤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 조례안은 올 1월 단행된 조직개편에 의해 폐기물 관리 업무가 문화복지국에서 환경수자원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5. 질의답변 요지

①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하면?

답변 : 현행 500m의 경우, 시내지역에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점이 가능한 지역이 있음. 이것을 1km로 확대하면 외곽지역 아니면 불가함.

(2) 질의 : 대규모 예식장 업도 규제가 가능한가?

답변 : 해당이 안됨. 조정신청은 가능함.

(3) 질의 : C마트 옆의 롯데슈퍼는 규제 가능한가?

답변 : 기존에 설치된 것은 제외됨.

②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1) 질의 : 수반되는 예산의 조달 방안은?

답변 :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음.

③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에 있어 아직도 규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 : 기존의 불합리한 부분을 완화, 보완하는 사항임.

(2) 질의 : 규제가 있어서 대기업의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답변 : 규제가 우리시보다 완화된 제천시보다 우리시의 승인건수가 많음.

(3) 질의 :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으로 완화할 용의는?

답변 : 개정안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답변 : 완화 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부분은 있음.

④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당일 예약도 가능한지?

답변 : 취소된 부분이나 미예약 부분이 있을 경우 가능함

(2) 질의 : 충주시민 전체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용의는?

답변 : 시민이용율이 30~40%임. 시민 전체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대리 예약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3) 질의 : 시설사용료 환불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답변 : 취소율은 줄어들겠지만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4) 질의 : 휴양림의 수지 분석은?

답변 : 인건비를 충당하는 수준임. 큰 수입은 되지 않음.

(5) 질의 : 감면율을 좀 더 높일 의향은?

답변 : 상향 조정은 가능함.

⑤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없음.

6. 심사결과

①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②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③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④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⑤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